

2017년 월 급여비용 안내문

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인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월 급여 급여비용 안내문을 고지합니다.

1. 주야간보호 급여비용

월 한도액	시간	현행(2016.01.01.)	개정(2017.01.01.)	비고
1등급 <u>1,252,000</u>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26,700	29,080	8.90%인상
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35,790	38,980	
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44,530	48,490	
	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49,050	53,420	
	12시간 이상	52,600	57,280	
2등급 <u>1,103,400</u>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24,720	26,920	
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33,160	36,110	
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41,250	44,920	
	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45,440	49,480	
	12시간 이상	48,730	53,070	
3등급 <u>1,043,700</u>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22,820	24,850	
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30,610	33,330	
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38,080	41,470	
	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41,980	45,720	
	12시간 이상	45,020	49,030	
4등급 <u>985,200</u>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21,780	23,720	
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29,570	32,200	
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37,040	40,340	
	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40,930	44,570	
	12시간 이상	43,980	47,890	
5등급 <u>843,200</u>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20,740	22,590	
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28,520	31,060	
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35,990	39,190	
	10시간 이상 ~ 12시간 미만	39,880	43,430	
	12시간 이상	42,930	46,750	
식 대	중식/석식	1식 당 2,500원	1식 당 2,800원	300원 인상
	간식	1식 당 1,000원	1식 당 1,000원	변동없음

2. 변경일자 : 2017.01.01

3. 근 거 :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42호(2016.12.22.)『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

2017년 1월 1일